

선거로고송 사용 규정

가. 자동차 및 확장장치 등의 사용

(1) 사용수량

구분		연설·대담용 자동차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발수)	휴대용 확장장치
광역단체장	후보자	1대	1조(1개)	1조
	연락소	1대	1조(1개)	1조
기초 단체장		1대	1조(1개)	1조
광역의원		1대	1조(1개)	1조
기초의원		1대	-	1조

(2)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가) 자동차 설비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나) 홍보물 첨부

선전벽보·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을 자동차 1대와 확장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부)이내에서 첨부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하며 규격제한은 없음.

(3) 사용제한

(가) 자동차에 부착된 확장장치의 확장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나) 확장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다) 휴대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장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라)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

(마)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장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기초의원 의원인 경우 휴대용 확장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는 사회자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녹음기·녹화기 사용

(1) 녹화기의 화면 규격

■ 광역 단체장의 후보자용 : 10㎡이내

■ 기초단체장의 구·군 연락소의 연설원용 및 후보자용 : 5㎡이내

■ 의원선거의 후보자용 : 3㎡이내

(2) 방송·방영 가능 내용

■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로고송)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의 방송·방영

※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없음.

㉠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1) 신청처 : 해당 지역 선관위

(2) 신청서식 : 붙임28 『규칙 별지 제28호의 2서식』

(3) 교체신청 :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를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신청

《 중앙 선관위 답변 》

상기 내용을 근거로 기초의원 출마자님들은 원칙적으로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확성기(나팔)를 부착할 수 없으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즉, 스피커(앰프)를 통해서선 거로고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